

## [사 건 명] 행심 2016 - 49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11.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같은 반 학생 ▲▲▲(피해학생)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출석정지(5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5시간)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12. 6.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2016. 11. 10. 오전 피해학생을 의심하는 일이 있었으나 곧바로 사과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5교시 수업 중 청구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툭툭 치고 다시 사과하라며 청구인에게 ‘한 주먹 걸어도 안 된다’ 라고 비꼬며 말하였다.
- 나. 그 후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 사건이 야기되었고, 청구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임에도 청구인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보고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져 부당하다.
- 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목격자들에게 피해학생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였고, 이 사건 조치는 피해학생의 주장과 편파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청구인은 그동안 피해학생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은 2016. 11. 10. 5교시 수업이 끝나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싸우자고 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학생부’ 로 갔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뒤따라가 ‘내가 먼저 맞을테니 싸우고 신고하라’ 고 하면서 피해학생을 발로 찼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방석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폭행을 피해 이를 방어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불과하므로 쌍방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진술서를 작성한 목격자들은 평소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로서, 담당교사는 목격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담임교사 등에게 피해학생과 화해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을 때린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 조언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별지기재와 같다.

나. 판 단

##### 1) 인정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첨부된 얼굴 및 부서진 안경 사진, 진단서, 진술서) 피 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서(첨부된 진술서, 면담기록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와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피해학생 앞자리에서 학습을 하였다.

② 청구인은 2016. 11. 9. 학교에 담배를 가지고 왔고, 2016. 11. 10. 아침 담임교사가 청구인의 소지품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청구인의 담배소지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결국 담임교사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말과 욕설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함께 담임교사를 찾아가 그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이 알려 주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 ③ 이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계속 피해학생을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을 비난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뒷자리에 있는 피해학생에게 싸움을 하자고 하였다.
- ④ 하지만 피해학생은 5교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부 지도교사에게 신고하겠다고 교실을 나섰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뒤따라 갔고, 청구인과 가까운 3명의 학생도 청구인과 따라갔다.
- ⑤ 피해학생이 학생부에 도착했으나 아직 수업시간이 끝나지 않아 지도교사가 없어 면담을 할 수 없었고, ‘꿈실’에서 지도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청구인이 ‘꿈실’로 들어왔고,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청구인이 먼저 발로 피해학생의 다리부분을 때렸고, 피해학생도 손에 방석을 쥐고 있던 채로 청구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 ⑥ 청구인과 함께 온 3명의 학생이 싸움을 말렸으나, 청구인은 ‘어차피 지금 2번 때려도 신고당할텐데, 더 때려야지’라고 하면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부 지도교사가 도착하여 싸움은 종료되었다.
- ⑦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글을 전달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면서 사과의 글이 적힌 종이를 구겨 청구인의 얼굴에 던졌다. 그리고 이 사건과 별도로 위 행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2016. 12. 30. 피해학생에게 청구인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4주) 및 특별교육이수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⑧ 한편 피해학생이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 □□□□□□□□□□ 2016. 12. 16.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15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의 조치를 하였다.

## 2) 이 사건 조치의 상당성

먼저 청구인만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7조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다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학생을 의심하였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담배소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야기된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싸우자고 하고 피해학생도 이에 응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학생부 지도교사’를 찾아갔고, 청구인은 친구 3명과 함께 피해학생을 뒤따라가 피해학생을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폭행에 맞서 방석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을 깨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그 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어차피 지금 2번 때려도 신고 당할텐데, 더 때려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학생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싸움을 회피하려는 피해학생을 뒤따라가 먼저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학교폭력’으로 불이익조치를 당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만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sup>1)</sup>,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청구인의 반성의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치는 상당하다고 보인다.

---

1) □□□□□ □□□□□□□□□□□□가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15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의 조치를 하였으나, 위 조치에 대하여는 ▼▼▼▼▼▼▼▼▼▼심판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이수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